제285회●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 2. 2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이정인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411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안 자 : 이정인 의원(찬성의원 22)

나. 제 안 일 : 2019. 2. 1.

다. 회 부 일 : 2019. 2. 7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정신질환자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법률」의 제정 이후 탈원화로 요약되는 지역사회 재활을 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 사회기술의 미약함 등을이유로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- 또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인 등에 대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심판에 대한 비용 등을 보전받 지 못하고 있어 그 취약점이 극대화 될 수 있음.
- 이러한 이유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돕고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서 법익을 지키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

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신질환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.
- 안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민법」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

-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심판 지원
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-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돕고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 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현 행 ¹⁾	개 정 안
제5조(지원 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림에게 후견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지원 대상)
1. •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
3. ~ 5. (생 략)	<u>따른 정신질환자</u> 4. ~ <u>6</u> 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
¹⁾ 제5조(지원 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

^{1. 「}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

^{2.「}치매관리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

- 서울시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, 「민법」 제14조의 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('12.7, 국가정책조정회의)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만 19세이상 성인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에게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지만 당 조례에서 열거하지 않음을 이유 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 조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.
-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에서도 그 대상이 질병, 장애,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정신질환자도 성년후견제도의 대상이라고 명명하고 있음.

※ 후견제도에서의 정신적 제약의 종류의

- 정신적 제약의 종류

구	분	빈도(건)	비율(%)
	뇌병변	408	41.6
정신적 제약의	치매	255	26.0
	발달장애	218	22.2
- 종류	정신장애	73	7.4
	기타 정신적 제약	27	2.8
	합계	981	100.0

-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 속적으로 결여된 자
- 4.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
- 5. 그 밖에 시장이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) 김성우, 한국후견제도의 운영과 가정법원의 역할, 법조 2017년 4(Vol. 722) 통계 재인용

○ 따라서 금번 개정안 제5조제3호의 대상인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인 정신질환자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후견심판청구 및 후견지원 활동 지원의 대상 으로 사료되며 이는 본 조례 제정 시 미비한 사안으로 보여짐.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, 등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정신질환자"라 망상, 환각, 사고(思考)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정신건강증진사업"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,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,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·교육·주거·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.
- 3. "정신건강복지센터"란 정신건강증진시설, 「사회복지시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(이하 "사회복지시설"이라 한다),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(이하 "정신건강증진사업등"이라 한다)을 하는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가.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 운영하는 기관
- 나.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시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4. "정신건강증진시설"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.
- 5. "정신의료기관"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(이하 "정신병원"이라 한다) 또는 의원
- 나. 「의료법」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
- 6. "정신요양시설"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7. "정신재활시설"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"정신질환자등"이라 한다)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3 종합 의견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 제도 이용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지만 당 조례에서 열거하지 않음을 이유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, 현행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 -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에서도 그 대상이 질병, 장애,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장애도 성년후견제도의 대상이라고 명명하고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목적이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함으로 넓은 의미에서 정신질환자도 현행 조례의 대상자로 볼 수 있음.
- 공공후견제도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 및 법률의 사각지내 내지 미비한 사안을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.
- 따라서 금번 개정안의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의 확대는 타당하다고
 사료됨.

□ 공공후견지원사업

- o (법적근거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
- o (대상)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
- o (종류) 선임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·한정·특정후견인 (이상 법정후견인). 임의 후견인으로 구분
 -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서비스는 거소 결정 또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대리 행사하여야 함으로 한정 후견인 중심으로 진행

○ 성년후견제도

- (개념)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 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
- (종류) 성년후견(능력 결여), 한정후견(능력 부족), 특정후견(일시 후원 필요)
- (임무) 재산관리 대리,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, 혼인·이혼 등 신분결정 동의 등
- (금치산·한정치산제와의 차이점) 재산관리 외에 의료·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후견자 보호 가능, 한정후견·특정후견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
- * 정신질환자의 공공후견서비스 종류

구분	법정후견인		임의후견인	
T世	성년후견인	한정후견인	특정후견인	음의우선인
선임요건 (사무처리능력)	· 사무처리 능력지속 결여	· 사무처리 능력부족	・일시적・특정 사무에 후원 필 요	·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 비
후견감독인	· 선임가능(임의)		・필수(후견계약 효력 발생요건)	

□ 추진체계

추	진 주 체	기능
보건 복지부	정신건강정책과	 사업 총괄 사업 지침 제·개정 및 시달 공공후견지원에 관한 관리·감독 공공후견지원 예산 집행 및 사업 평가 공공후견인(법인) 지정
보건 복지부	국립정신건강센터	●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 지원 - 공공후견 지원사업 사업지침 제·개정 - 공공후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- 시·군·구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- 공공후견인(법인) 대상 교육
시·군·구	정신건강증진담당	 ● 후견감독기관 - 공공후견인(법인) 감독 - 정기보고서 점검 및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- 피후견인 권익보호사항 확인
공공후견인 (법인)	지정 기관	 ● 공공후견인(법인) 활동(후견서비스 제공 등) ─ 공공후견담당 직원 교육 등 관리 ─ 사업실적보고(연 2회) ●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● 활동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작성 · 보고 ●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
정신요양 시설	피후견인 입소기관	• 후견인 활동 협조